P-123-2012

공업용 가열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장 희

- o 제정 경과
 - 2012년 11월 화공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KS B 6110 : 공업용 연소로의 안전 통칙 2003
- o 관련법령, 규칙, 고시 등
 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32조(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)
 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44조(방화조치)
 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73조(계측장치 등의 설치)
 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81조(건조설비의 구조 등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11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

공업용 가열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금속 압연 가열로, 단조 가열로, 금속용 열처리 등의 공업용 가열로(이하 가열로라 한다)의 구조, 기능 및 조작 취급과 안전 대책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금속 압연 가열로, 단조 가열로, 금속용 열처리, 건조로 등의 공업용 연소로의 구조, 기능 및 조작 취급과 안전 대책에 대한 일반적사항의 기술적 지침에 적용한다. 다만 인화성 분위기 가스를 사용하는 것 및 인화성증기가 발생하는 금속용 열처리, 건조로를 제외하고,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된사항은 우선 적용한다.

3. 정의

- 3.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1) "오일 예열기"란 버너의 분무에 적합한 온도까지 오일을 가열하는 기기를 말한다.
- (2) "긴급차단밸브"란 긴급 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자동밸브를 총칭한다.
- (3) "보염"이란 화염을 소정의 장소에 정착시켜서 안정화하는 기능을 말한다.
- (4) "연소감시장치"란 연소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, 화염이 이상 소화하거나 연소상태가 극도로 악화하였을 때에 연소 차단기구가 작동하여, 연료 공급을 정지

P-123-2012

시키든가 또는 연소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.

- (5) "발화온도"란 공기 중에서 연료의 온도가 상승한 경우에 점화원이 없어도 연소를 개시하는 온도를 말한다.
- (6) "고장안전(페일 세이프, Fail safe)"란 가열로 및 기기 뿐만 아니라 제어, 조작계에 고장 및 이상이 발생하여도 안전 범위에서 작동하는 기능을 말한다.
- (7) "실수방지(풀 프루프, Fool proof)"란 가열로 및 기기의 틀린 조작을 방지하며, 잘 못 조작하여도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말한다.
- (8) "가스 감(승)압기"란 연료 가스를 연소 장치에 적합한 소정의 압력까지 감(승)압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(9) "연료스톱밸브"란 일반적으로 버너 바로 앞에 설치하여, 점화 및 소화시에 개폐하는 수동 밸브를 말한다.
- 3.2 그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.

4. 안전에 대한 구조 및 기능

- 4.1 가열로의 안전에 대한 구조 및 기능
 - (1) 가열로는 충분한 환기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 - (2) 가열로는 점화 시에 문을 열고 점화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- (3) 가열로는 그 속에 분사된 연료가 적절한 공기의 공급을 받아 양호한 연소를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
P-123-2012

- (4) 연도 댐퍼를 닫은 채로는 점화가 안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5) 연도 댐퍼는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이고, 그 열림 상태가 쉽게 확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6) 연도는 강우, 침수 및 적설 등에 의해서 통풍이 저해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7) 가열로는 충분한 환기가 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(8) 방산구(폭풍 방출구)는 작동하였을 때도 2차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비중이 공기보다 큰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가열로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환기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, 방산구에서 배출되는 배출물질은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여야 한다.
- (10) 지하의 점검 피트 등에는 2곳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1) 설비와 배관 등에는 KS A 0503 "배관계의 식별 표시" 방법을 참조하여 설비명, 배관명, 취급 유체명, 유체 흐름방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(12) 설비를 최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제조자로부터 안전운전절차서, 설비유지보수지침서 등의 안전운전과 관련된 절차서나 지침서 등을 제공받아 설계자 및 제작자의 의도와 현장 운전조건과 일치하게 사용자는 시운전 전까지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(13) 시운전이 완료하면 시운전 동안에 발견된 문제점을 설계 범위 내에서 안전운전 과 관련된 절차서나 지침서 등을 수정·보완하고, 2년 마다 현장에 맞게 수정·보 완 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(14) 가열로는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 및 저장하는 설비 등으로

P-123-2012

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.

4.2 오일공급탱크

- (1) 오일공급탱크는 가열로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탱크에는 잘 보이는 곳에 액위(유면)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탱크에는 탱크 내의 기름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또는 지나치게 줄어든 경우,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하고, 넘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월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탱크의 오일 출구는 탱크 바닥의 이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탱크 바닥에 고이는 물 및 슬러지 등의 이물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6) 탱크에는 대기와 통하는 통기관 또는 통기구를 설치하고, 화염방지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탱크는 접지하여야 한다.
- (8) 탱크에 가열 장치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- (가) 연료유의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나) 탱크의 오일 출구 등에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연료유의 온도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P-123-2012

- (라) 가열 열원은 증기 또는 온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. 이 때 증기 또는 온수 가 겨울에 동결할 우려가 있을 때는 동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마) 가열 장치는 점검 및 보수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.
- (9) 탱크 등의 구조는 내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

4.3 연료배관

- (1) 연료배관 등(연료배관, 공기배관 및 이들의 부속 장치를 말한다)은 과열 또는 파손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연료배관 등은 최고 사용 압력의 1.5배 이상의 압력 및 사용 온도에 견디고, 또한 연료 등의 특성 및 사용 상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(3) 연료배관 등은 연료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 방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연료배관은 공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연료배관 등에는 연료의 팽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연료배관 및 부속장치는 접지하여야 한다
- (7) 연료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가스 빼기 장치 및 드레인 빼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오일배관에 오일 예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.2.오일공급탱크의 (8)을 준용한다
- (9) 연료배관 등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P-123-2012

- (10) 연료배관 등에는 필요에 따라 플레시블관 또는 플레시블관 이음을 설치하여 지진 등의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1) 연료배관 등의 밸브는 개폐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,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.

4.4 버너

- (1) 버너는 사용하는 연료의 성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(2) 버너는 사용 조건에서 정확하게 안정한 화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염 기능이 있어야 한다.
- (3) 버너는 적당량의 공기가 공급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4) 버너는 화염이 정확하게 안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공기비를 갖도록 조정할 수 있고 또한 장기간 사용하여도 공기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5) 버너에는 점화용 버너, 그리고 점화용 전극 등의 점화 장치가 있든가 또는 확실한 점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점화봉용의 점화공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점화용 버너는 메인 버너에 점화하였을 때 그 메인 버너의 연소용 공기 흐름 등으로 화염이 꺼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7) 점화용 버너는 그 사용 조건의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메인 버너로 불이 당기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점화용 버너는 그 연소 상태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소감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용하지 않는다.
- (9) 연료의 발화 온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가열로, 자주 점화 및 소화하는 가열로 에서는 원칙적으로 화염이 안정한 점화용 버너 또는 확실한 점화원을 설치하여야

P-123-2012

한다.

(10) 오일버너는 필요에 따라 연소 정지 후의 남은 오일 처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4.5 연소안전장치

(1) 안전차단밸브

- (가) 연료배관은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끊어지는 등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, 즉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안전차단밸브는 우회배관(By-pass piping)이 있어서는 안 된다.
- (다) 안전차단밸브는 작동 전원 및 작동 공기압 등이 끊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연료 의 공급을 차단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라) 안전차단밸브의 부착 위치는 버너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(마)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가열로의 연료배관에 설치하는 안전차단밸브는 연료의 누설 시험을 하기 위해 차단 밸브의 다음에 연료 스톱밸브 및 시험콕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.

(2) 연소감시장치

- (가) 연료의 발화 온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가열로, 그리고 자주 점화 및 소화하는 가열로 또는 밀폐해서 사용하는 가열로에는 연소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.
- (나) 복수의 버너에 연소감시장치를 만든 경우에는 버너 마다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.

P-123-2012

- (다) 연소감시장치는 다음을 따른다.
 - ① 메인 버너가 점화하지 않을 때 또는 그 화염이 꺼진 경우에는 즉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신호를 제어반에 보내는 구조이어야 한다.
 - ② 가열로 내 복사 등으로 오조작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.
 - ③ 버너 점화시의 스파크 등으로 오작동할 염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안전제어장치는 필요에 따라 연소용 공기압 이상 검출기, 연료 가스 누설 검출기, 연료 공급압 이상 검출기, 이상 온도 상승 검출기, 단수 경보기 및 감지 장치 등을 가지고 있는 보안 제어기기를 설치하여 이상에 의한 위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검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연소제어장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가열로의 형식, 용도 및 주요 제어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응답성, 작동 범위, 긴급시의 작동 등의 성능이 최적인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. 또한, 기기의 성능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 위치 및 설치 방법 등에 유의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.

4.6 제어 및 조작회로

- (1) 제어 및 조작회로는 고장안전 및 실수방지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.
- (2) 제어 및 조작회로는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점등과 경보음 등으로 신속한 경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이상이 발생하여 가열로가 정지한 후에 재가동하는 경우에는 이상 원인을 제거한 뒤에 재가동 조작을 하지 않으면 기동이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4) 조작 스위치는 조작하는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, 조작자의 잘못 조작을 방지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.
- (5) 조작반 등은 설치환경에 적합한 온도 이하이고, 폭발, 고온물 접촉 및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P-123-2012

- (6) 조작반 등은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가열로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·유량계·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5. 안전운전 및 취급

5.1 일반적 주의사항

- (1) 설비 및 기기의 구조, 그리고 성능 등을 잘 이해하고, 안전장치의 기능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(2) 함부로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, 우회, 봉쇄하고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.
- (3) 사용하는 연료의 성상은 사용하는 연소 장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 또 성상 및 종류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연소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새 연료의 성상 및 종류에 적합한 조정 및 개조 등을 하고나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버너의 조작은 사용 조건 등에 적합한 안전운전절차서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점화, 운전 및 소화 순서 등으로 운전하여야 한다.
- (5) 기동, 점화, 소화, 정지 및 긴급시의 조치 등 안전상 필요한 조작순서 등을 요약한 비상운전절차서 및 비상조치계획서등을 조작반 근처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.
- (6) 유량 조절밸브 및 압력 조절밸브 등은 항상 제기능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.
- (7) 버너는 소정의 범위내로 공기비를 설정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.
- (8) 함부로 연료의 공급 압력 및 연소용 공기압 등을 변경하여 소정의 압력을 초과하는 값으로 설정하고, 과부하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.

- 5.2 연소 장치의 점화, 운전, 소화 및 정지의 조작 순서
 - (1) 점화 준비
 - (가) 점화전에 메인 버너 및 점화용 버너 직전의 연료 차단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한다.
 - (나) 연료의 공급 압력 및 온도, 연소용 공기압, 그리고 냉각수압 등이 소정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.
 - (다) 연도 댐퍼 등이 소정의 열림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.
 - (라) 배수 상황이 정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(2) 점화
 - (가) 점화 직전에 다음의 요령으로 반드시 예비 퍼어지를 하여야 한다.
 - ① 예비 퍼어지는 원칙으로 가열로 내용적의 4배 이상의 공기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예비 퍼어지의 공기 유량은 최대 연소시의 50%이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.
 - (나) 메인 버너에 점화하는 경우는, 원칙으로 공기를 유동시키고 나서 소정의 점화봉, 점화용 버너 또는 확실한 점화원으로 소정의 위치에서 소정의 조작 방법에 따라 점화하여야 한다.
 - (다) 점화용 버너에 점화하는 경우에도 메인 버너의 경우에 준한다.
 - (라) 특히 수동 점화의 경우는 공기를 유동시키고 나서 소정의 점화원을 준비하고 연료 스톱 밸브 또는 연료 차단 밸브를 열고, 원칙으로 점화를 5초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P-123-2012

- (마) 착화의 확인은 착화 확인구멍을 통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연소감시장치로 확인한 다.
- (바) 2개 이상의 메인 버너의 경우는 소정의 점화원을 준비하고 소정의 조작방법에 따라 반드시 1개씩 연료 스톱밸브 또는 연료 차단밸브를 열고 점화하여 착화를 확인한 뒤에다음 메인 버너의 점화 조작으로 넘어가야 한다.
- (사) 점화에 실패한 경우에는 신속한 연료 스톱밸브 또는 연료 차단밸브를 닫고, 재점화 전에 예비 퍼어지로 부터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점화를 재차 실시하여야 한다.
- (아) 메인 버너는 지정된 점화시의 연소량으로 점화하여야 한다.
- (3) 운전 중 및 이상의 조작
- (가) 운전 중에는 항상 바른 상태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이상 사태로 인하여 화염이 꺼진 경우 또는 연소가 불안정하게 된 경우 기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연료를 차단하고, 연료스톱밸브를 닫아야 한다. 이때 반드시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다) 이상 정지 후의 재기동은 안전을 확인한 후에 예비 퍼어지로 부터 일정한 조작 방법에 따라 점화하여야 한다.
- (라) 가열로의 운전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연료를 차단하고 소정의 연료 스톱 밸브를 닫고, 그 닫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(4) 소화

- (가) 소화는 안전운전절차서 등에 따라 소화한다.
- (나) 점화용 버너가 연속점화방식 또는 중복점화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메인 버너를 소화

P-123-2012

한 후에 버너를 소화하여야 한다.

(5) 정지

- (가) 운전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안전운전절차서 등에 따라 연료 스톱밸브 또는 연료 차 단밸브를 닫고 필요에 따라 포스트 퍼어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나) 버너 소화 후에는 연료배관 계통의 하류에 있는 밸브에서 상류의 것으로 차례로 닫아야 한다.
- (다) 운전 종료 후에는 안전운전절차에 따라 각종 밸브와 스위치 등을 닫거나 열어 둔다.

5.3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

작업장 내의 방음, 채광, 조명, 환기, 정리정돈 및 보호구 착용 등으로 안전하고,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6. 일상점검 및 유지보수

6.1 일상 점검

- (1) 가열로의 본체, 연료배관, 메인 버너, 점화용 버너, 연소안전장치 및 각종 제어기 기 등에 대하서는 제작자가 제시하는 안전점검기준과 사용자의 안전운전절차서 등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점검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(3) 점검 대상의 가열로는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하고, 연료의 수동 스톱 밸브를 닫고, 밀폐시설 내부를 환기시키고, 또한 점검 중임을 조작반 위에 표시하는 등 다른 사람이 잘못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안전장치, 주요 설비 및 정기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예비품을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P-123-2012

- (5) 일상 점검은 안전운전지침서, 유지보수절차서 등이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.
- (6) 특이 사항은 운전일지에 기록, 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.
- (7) 가스 누출 등의 긴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운전절차서, 비상운전절차서 등에 따라 안전조치 후에 보고한다.

6.2 정기 점검

- (1) 정기 점검은 안전운전지침서, 유지보수절차서 등이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.
- (2) 점검 결과는 기록하고,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.

6.3 유지보수

- (1) 점검후의 보수
- (가) 점검의 결과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나) 보수 및 교환 등의 결과는 기록하고,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(다) 점검 일자, 점검내용, 점검자 및 일상점검의 특이사항, 점검 후 보수 내용을 설비이력카드에 기록하고 보존한다.

(2) 예방보존

(가) 연료 차단 밸브, 각종 검지기 및 수명 표시가 있는 기기 등 안전 확보상 중요한 기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신품과 교환하는 등의 보전대책 실시한다.

P-123-2012

(나) 가열로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일상의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상 상태를 파악하고, 설비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.